[별지 제60호서식] <신설 1997.3.24>

(수납기관보관용) (시·도, 시·군·구 통보용) (납부자 보관용) (앞면)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납부통지서					
납부의무자	①면허·허가 신고번호		⑤ 연 도		
	②시 설 물 소 재 지				
	③ 성 명		⑥ 제 호		
	④ 주 소				
⑦부과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⑧납부기한					
부 담 금 내 역					
⑨총계	⑩ 금회부담금	⑪ 미수부담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영수필통지서					
납부의무자	①면허·허가 신고번호		⑤ 연 도		
	②시 설 물 소 재 지				
	③ 성 명		⑥ 제 호		
	④ 주 소				
⑦부과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⑧납부기한					
부 담 금 내 역					
⑨총계	⑩ 금회부담금	⑪ 미수부담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영수증					
납부의무자	①면허·허가 신고번호		⑤ 연 도		
	②시 설 물 소 재 지				
	③ 성 명		⑥ 제 호		
	④ 주 소				
⑦부과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⑧납부기한					
부 담 금 내 역					
⑨총계	⑩ 금회부담금	⑪ 미수부담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48277-30211 일

'96.12.21 승인

297mm ×210mm

(일반용지 60g/㎡)

(뒷면)

○ 유의사항

1. 납기 내에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독촉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79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당하게 됩니다.

2.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부담금이 기재된 납부의무자는 미수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4.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의 납부장소는 수협·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청을 경유하여 재결청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은 수산업법시행령 제59조의4 별표 3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